

# 첨단제조분야의 국제협력계획을 위한 국제IMS사업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 목 차

I. 서문(序文) .....	1
II. 목적(目的) .....	1
III. 배경(背景) .....	1
IV. 운영원칙(運營原則) .....	2
V. 추진체계(推進體系) 및 재정(財政) .....	2
VI. 관리체계(管理體系) .....	2
VII. 이관(移管) 및 시작(始作) .....	4
VIII. 사업기간(事業期間) .....	4
IX. 신규참가국의 승인(承認) .....	4
X. 프로젝트컨소시엄의 구성(構成)·평가(評價) 및 기타 사업수단 .....	4
XI. 중소기업(中小企業) .....	4
XII. 결과의 보급(補給)·확산(擴散) .....	4

## 기술부록

부록 1: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규정 .....	6
부록 2: 국제사무국의 예산(豫算) 책정 및 집행을 회계책임과 원칙 .....	12
부록 3: 기술주제(技術主題) .....	13
부록 4: 국제사무국(國際事務局)의 역할 .....	16
부록 5: 지역사무국(地域事務局)의 역할 .....	16
부록 6: 신규참가국(新規參加國)의 승인 .....	16
부록 7: 프로젝트컨소시엄의 구성 및 평가 .....	17
부록 8: 중소기업,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에 대한 IMS의 역할 .....	19

첨단제조분야의 국제협력계획을 위한

## 국제IMS사업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 I. 서문(序文)

본 문서는 지능형생산시스템(IMS)에 대한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 방식의 IMS Scheme(이하 “IMS사업”이라 한다) 참여국들을 위한 운영규정을 정한다. 본 운영규정은 국제 혹은 국내법 하에서의 의무를 발생할 의도는 가지지 아니한다.

### II. 목적(目的)

“IMS사업”은 참여자들이 산업경쟁력을 고양하고, 전 세계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첨단 제조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국제적·다자간 협력계획이다. “IMS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삶의 질 및 인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에 지식 기반의 제조업을 고양하고;
- 2) 제조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차세대에게 전수하며;
- 3) 국제협력활동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 4) 지식기반 제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활동을 전개하며;
- 5) 공통의, 글로벌 규범(기준) 및 표준 확립에 기여한다.

### III. 배경(背景)·근본사상(根本思想)

제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제조업은 부 창출에 있어 여전히 제일의 원동력이며, 경제성장을 위해 건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첨단 제조업의 연구개발에서 잘 관리된 국제협력은 제조업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1)</sup> “IMS사업”은 협력적 연구개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IMS사업”은:

- 1) 글로벌, 진취적 통합체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고(예: 로드맵, 분석, 예측);
- 2) 상호작용 및 협업적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창출을 촉진하며;
- 3) 협업적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의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화 이전단계의 주제들에 관한 협력 노력을 포함);

---

1) “IMS 공동연구계획”은, 성공적인 타당성연구의 결과에 따라, 1995년도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에 “IMS 공동연구계획”의 기간은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초기 1단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IMS사업” 참가국들은 1단계사업을 확장·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IMS사업” 참가국들에 의해 “2단계사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제운영위원회”는 참가국들에게 국제적·다자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정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IMS사업”을 갱신하라고 권고하였다.

- 4) 국제적 협업 및 보급·확산 활동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 프레임워크(부록 1 참조)를 제공하며;
- 5) 산출된 연구결과들을 널리 보급한다.

#### IV. 운영원칙(運營原則)

“IMS사업”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된다:

- 1) 협력에 대한 기여 및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 2) 공동프로젝트는 산업계와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 3) 공동프로젝트는 가능하면 대학의 참여를 포함시켜야 하고;
- 4) 공동프로젝트는 지역간, 및 지리적으로 분산된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되며;
- 5) 공동프로젝트는 혁신 사이클 전반에 걸쳐 도출 가능하고;
- 6) 정부의 후원 혹은 정부 자원을 이용하는 IMS 프로젝트는 경쟁적 연구개발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 7) 공동프로젝트의 결과는 적절히 통제된 정보 확산의 과정을 통해 공유되고;
- 8) 공동프로젝트 수행기간에 창조되거나 혹은 제공된 지적재산권의 공정한 배정을 위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

#### V. 추진체계(推進體系) 및 재정(財政)

“IMS사업”은 아래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추진체계로 운용된다:

- 1) 국제운영위원회(ISC)
- 2) 국제사무국(IRS)
- 3) 지역사무국(RSs)

##### A. 관리체계를 위한 재정

- a. 각 참가국은 자체 참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 b. 각 참가국은 참가비 자금조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 c. 각 참가국은 국제사무국의 운영비를 부담함에 있어 공정한 방법으로 기여해야 하고;
- d. 각 참가국은 자국 대표단의 지원비용에 책임을 져야 하며;
- e. 각 참가국은 관리체계의 운영상황을 감사(監査)할 권한을 가지며;
- f. 국제사무국 예산의 책정 및 집행 원칙은 부록 2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 B.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 a. 각 참가국은 프로젝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며;
- b. 각 참가국은 프로젝트 비용 조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VI. 관리체계(管理體系)

- A. 국제운영위원회(ISC) : 국제운영위원회는 “IMS사업”을 감독해야 한다. 운영 위원들은 참가국 출신이고, 제조관련 이슈에 지식이 풍부하고 산업계, 학

계, 혹은 정부/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명망가여야 한다. 운영위원들은 “IMS사업”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구성 : 각 참가국은 보통 2명의 운영위원과 1명의 옵서버로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원은 각 참가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긴다. 대표단원의 교체요원 임명을 권장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각 대표단에는 대표단의 의사를 총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수석대표를 두어야 한다. 수석대표는 각 참가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긴다.

국제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참가국의 대표단은 해당 지역사무국으로부터 2명까지 동반할 수 있다. 그 외의 추가 참석은 국제운영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맡긴다.

2. 합의 : 국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3. 의장 : 국제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참가국들 간에 순환제로 해야 하며, 국제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각 의장의 임기는 30개월로 정한다. 의장이 된 참가국은 의장 수임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을 조직할 책임을 진다. 차기의장국은 부의장직을 담당해야 한다.

4. 기능 : 국제운영위원회는 “IMS사업”의 수행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신규참가국의 참여문제 포함). 또한, 국제운영위원회는:

a. 전반적 지침을 제공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부록 3, 4, 5, 7, 8 및 본 운영규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추가적 부록들을 점검, 수정 및 업데이트 하며, “IMS사업” 수행내용을 감독하고;

b. 국제사무국을 감독하고 그 예산을 승인하며;

c. “IMS사업” 및 제조업을 위한 국제적 진흥책을 제공하고;

d. 제 X장에 언급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를 인증하며;

e. “IMS사업”의 수행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정기보고서를 제공하며;

f. “IMS사업”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이 본 운영규정의 목적, 원칙, 및 추진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확실하게 하며;

g. 국제운영위원회, 국제사무국, 및 프로젝트컨소시엄 멤버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h. 신규 “IMS사업” 문서를 후원 및 승인하며;

i.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임시로 태스크포스 혹은 위원회(예: 기술적 혹은 법적 문제들)를 구성해야 한다.

B. 국제사무국(IRS) : 국제운영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참가국은 국제사무국의 조직 및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사무국의 첫째 역할은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실천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국제사무국의 기능은 부록 4에 나와 있다.

- C. 지역사무국(RSSs) : 참가국의 정부/공공기관은 각자의 해당 지역사무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역사무국의 기능은 부록 5에 나와 있다.

## Ⅶ. IMS 이관(移管) 및 시작(始作)

- A. 이관(移管) : 초기 1단계 “IMS사업” 하에서 승인된 IMS 프로젝트들은 1단계 국제운영위원회 및 2단계 국제운영위원회가 승인하여 계속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의도이다. 회원국이 되기 위한 신청절차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IMS 활동들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 B. 시작(始作) : “IMS사업”은 아래의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게 될 것이다.
  - (1) “IMS사업”의 본 운영규정을 최소 3개의 참가국이 비준(추인). 기존의 “IMS사업” 참가국들도 그들이 본 운영규정을 비준(추인)함으로써 본 “IMS사업”의 신규참가국이 된다.
  - (2) 국제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명
  - (3) 지역사무국장들의 임명

## Ⅷ. 사업기간(事業期間)

참가국들은 사업의 지속, 수정,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 5년마다 “IMS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가국은 12개월 전에 다른 참가국들에게 탈퇴결정을 통보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Ⅸ. 신규참가국의 승인(承認)

국제운영위원회는 신규참가국의 입회를 허가할 수 있다. 신규 참가국의 승인을 위한 절차는 부록 6에 기술되어 있다.

## Ⅹ. 프로젝트컨소시엄의 구성·평가와 기타 사업수단

국제운영위원회는 (i) 부록 7에 기술되어 있는 프로젝트컨소시엄 구성, 평가 및 재검토, 그리고 (ii) 본 운영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다른 협력적 수단들을 위한 절차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Ⅺ. 중소기업(中小企業)

각 참가국 및 국제운영위원회는 “IMS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직·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 메카니즘들이 부록 8에 나와 있다.

## XII. 결과의 보급(補給)

“IMS사업”에서 정보의 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정보의 보급은 부록 1에 나와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중간 및 최종 프로젝트 기술결과물들의 보급도 이에 해당한다.

정보의 보급은 프로젝트, 지역, 지역 간 수준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보급은 서면보고서, 국제심포지엄, 및 학계의 출판물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 부록 1 :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규정

### 목적(目的)

본 규정은 지능형생산시스템사업(“IMS사업”)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에 대한 권장내용 뿐만 아니라 필수사항을 정한다. 본 규정의 목적은 IMS사업의 공동 R&D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산출되었거나, 사용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아래사항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 (a) 프로젝트 협력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에 의한 기여 및 이익은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b) 파트너들 간에 교섭할 때 필요한 유연성과 프로젝트들과 파트너들 간에 필요한 절차의 균일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그리고
- (c) 협력하는 동안 제공되거나 창조되는 어떤 지적소유권도 보호하고, 공정하게 할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결과를 파트너들이 공유하게 된다.

### 제1절 : 정의(Definitions)

- 1.1 수익배분(ACCOUNTING) : FOREGROUND(프로젝트 수행 중 창조된 지적재산)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첫번째 파트너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공개하거나 인가하거나 할당할 때,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과 같은 것들을 한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 사이에서 공유의 정도를 계산하는 기능
- 1.2 제휴기관(AFFILIATE) : 직·간접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거나,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또는 어떤 파트너와 동일한 소유권 혹은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법적 기관. 정부를 통한 공동 소유권 혹은 통제는 그 자체로 제휴기관을 발생치 아니한다.  
소유권 혹은 통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a) 발행된 투입주식자본 액면가의 50% 이상의 직·간접 소유권, 또는
  - (b) 이사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사람을 투표를 통해 선출할 권한이 주어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출·임명할 권한이 주어지는, 주식의 50% 이상의 직·간접 소유권, 또는
  - (c) 주식의 50% 이상의 직·간접 소유권, 및 계약조항을 통해 회사의 경영·운영 통제에 대한 직·간접 권리
- 1.3 BACKGROUND : FOREGROUND가 아니면서, 파트너 혹은 제휴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BACKGROUND RIGHTS 이외의 모든 정보 및 지적재산권
- 1.4 BACKGROUND RIGHTS : FOREGROUND가 아니면서, 공표되자마자 곧 어떤 파트너 혹은 그 제휴기관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게 될 발명품, 디자인, 실용신안, 응용에 대한 특허들, 및 프로젝트 수행 혹은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 1.5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일반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법령이나 서면으로 된 비밀합의 하에 비밀리에만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
- 1.6 컨소시엄(CONSORTIUM) : 프로젝트를 공동수행 하기로 합의한 셋(3) 이상의 그룹
- 1.7 협약(COOPERATION AGREEMENT) :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련하여 컨소시엄의 모든 파트너들이 서명한 합의내용들

- 1.8 FOREGROUND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처음으로 발생, 착안, 발견, 개발된 모든 정보 및 지적재산권
- 1.9 그룹(GROUP) :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국 내의 모든 파트너들
- 1.10 IMS사업(IMS SCHEME) : 지능형제조시스템(IMS) 사업
- 1.1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부록 1.A 참조)의 제2절 8항에 정의된 모든 권리. 단,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호명과 명칭들 제외.
- 1.12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S) : 이윤추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조직되고, FOREGROUND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공공 혹은 사적인 법적 단체
- 1.13 참가국(PARTICIPANT) :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및 참가국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IMS사업에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외의 국가 혹은 지역
- 1.14 파트너(PARTNER) :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협약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
- 1.15 프로젝트(PROJECT) : IMS사업 내의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1.16 요약정보(SUMMARY INFORMATION) :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의 목표, 현황 및 결과를 서술하는 문서

## 제2절: 필수규정(Mandatory Provisions)

개별 협약은 본 제2조의 2.1-2.13의 각 조항과 완전히 일치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며, 각 협약에서 사용되는 정의들은 본 규정의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이어야 한다.

프로젝트, 예비 파트너 또는 그의 제휴기관들은 법령이나 합의에 의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고, 정부의 요구사항이 협약에 따른 권리나 책임에 영향을 미칠 때 예비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에게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프로젝트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할 경우, 파트너들은 FOREGROUND의 소유권, 사용, 공개 및 라이선싱이 본 필수규정에 합치될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자신들의 제휴기관을 서로 통지해 주어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중 제휴기관에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협약 체결에 들어가는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법적단체가 제휴기관의 조건을 충족시킨 직후에, 협약내용에 의거하여 파트너들은 제휴기관을 본 필수규정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2.1 파트너들은 본 규정에 맞추어 그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관리할 서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유권(Ownership)

2.2 FOREGROUND는 그것의 창조에 참여한 파트너 단독으로 또는 파트너들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 2.3 FOREGROUND의 단독소유자인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수익배분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그 FOREGROUND를 공개하거나 비독점적으로 인가할 수 있다.
- 2.4 협약에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FOREGROUND의 공동소유자인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에게 수익배분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그 FOREGROUND를 공개하거나 비독점적으로 인가할 수 있다.
- 2.5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에게 수익배분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BACKGROUND, BACKGROUND RIGHTS, 및 FOREGROUND와 관련된 독점 혹은 공동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BACKGROUND RIGHTS 또는 FOREGROUND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양도하는 파트너들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로 양도해야 하며, 각 양수인에게 양도권의 관점에서 협약에 명시된 양도인의 책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정보의 보급(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2.6 요약정보는 다른 프로젝트에 속한 모든 파트너들 및 IMS사업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2.7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정보가 포함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라이선스 권리들(License Rights)

#### FOREGROUND

- 2.8 각 파트너와 그 제휴기관들은 연구개발 목적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로열티 없이 FOREGROUND를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은 사용권, 저작권, 판매권, 및 수입권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 (a) 파트너들은 비영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비영리기관 파트너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협약에 합의할 수 있고, 또한
  - (b) 로열티가 액수가 작고 IMS사업에의 기여도 및 이익이 균형 있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면, 파트너들은 비영리기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비영리기관 파트너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협약에 합의할 수 있다.
- 2.9 소유권을 갖지 않은 파트너와 그 제휴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 제3자에게 FOREGROUND를 공개하거나 인가를 하청하면 안된다:
  - (a) 각 파트너와 그 제휴기관들이 오로지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목적으로 FOREGROUND를 비밀리에 공개하는 경우
  - (b) 각 파트너와 그 제휴기관들이 오브젝트 코드로 FOREGROUND의 부분인 소프트웨어를 인가 하청하는 경우
  - (c) 각 파트너와 그 제휴기관들이 본질적으로 FOREGROUND를 공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BACKGROUND

- 2.10 프로젝트에 속한 파트너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BACKGROUND를 제공하거나 인가할 수 있다.
- 2.11 파트너들과 그 제휴기관들은, 금전적인 고려사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없이,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목적만을 위해 다른 파트너 혹은 그 제휴기관들의 BACKGROUND RIGHTS을 사용할 수 있다.
- 2.12 파트너들 및 그 제휴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FOREGROUND의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한 통상적인 상업조건에서 다른 파트너들 및 그 제휴기관들에게 BACKGROUND RIGHTS의 라이선스를 허여해야 한다:
  - (a) 라이선스를 소유한 파트너 및 그 제휴기관들이 법적사유 또는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의해서 그런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없고, BACKGROUND RIGHTS이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 (b) 예외적인 상황에서,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BACKGROUND RIGHTS의 제외에 대해 파트너들이 합의하는 경우

## 권리의 존속(Survival of Rights)

- 2.13 협약의 규정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FOREGROUND, BACKGROUND, 및 BACKGROUND RIGHTS에 대해 파트너들 및 제휴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된다는 것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 제3절 : 협약시 검토가 필요한 조항

파트너들은 그들의 협약시에 다음 각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 결과의 출판(Publication of Results)

- 3.1 파트너들은 요약정보 이외의 프로젝트 산출물의 출판을 위해 다른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동의에 관한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 3.2 항 3.3 및 3.4에 부합하여 FOREGROUND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트너들은 비영리기관들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FOREGROUND를 학술적 목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 FOREGROUND의 보호(Protection of Foreground)

- 3.3 파트너들은 지적재산권의 수단으로 FOREGROUND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구해야 하며, 발명품의 창작에 대해서는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보호에 대한 간구책을 적시에 통보하고 발명품에 대한 요약서도 제공해야 한다.
- 3.4 파트너들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모든 파트너들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방안에 관한 이슈 및, 요청이 있거나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발명품의 공표에 관한 이슈를 검토해야 하며, 그런 보호조치가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다른 파트너에 의해 수행되고 FOREGROUND를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이 그런 보호를 추구할 의도가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로 협력해야 한다.

####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3.5 파트너들은 비공개 정보를 받은 어떤 파트너가 그 자신 혹은 그 제휴기관들 만 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분쟁의 해결과 적용 법률(Dispute Settlement and Applicable Laws)

3.6 파트너들은 협약시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3.7 파트너들은 협약시에 협약을 통제할 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 제4절 : 선택 조항들(Optional Provisions)

파트너들은 협약시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휴기관 규정
- 독점금지법 / 경쟁법규 문제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고용주 / 고용인의 관계
- 수출통제 및 승인
- 동의의 범위
- 제3자의 범위
- 타 프로젝트들에 참여중인 파트너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허가
- 지적재산 실시자의 사용시 발생하는 권리자의 책임
- 파견근무자 혹은 선임근무자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들
- 프로젝트의 신규 파트너들 가입 및 파트너 탈퇴 문제
- 협약 배경 공지
-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 사용, 및 비공개
- 미해결자료
- BACKGROUND RIGHTS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요금
-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 과세
- 협약의 유효기간 및 용어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수행 중 특별상황에 따라 추가할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파트너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어떠한 추가적인 사항도 본 규정의 제1조 및 제2조와 상충해서는 안된다.

부록 1.A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1967.7.14, 스톡홀름)

협약 제2절 8항의 정의에 의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대한 권리;

연기/연주/상연하는 예술가들의 연기/연주/상연물;

음반, 레코드와 방송물들;

인간의 노력으로 산출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인 발견;

산업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그리고 상호, 호칭들;

부당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산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다른 권한."

## 부록 2 : 국제사무국 예산 책정 및 집행을 위한 회계책임과 원칙

1. 국제운영위원회 및 국제사무국 직원은 국제사무국 예산관련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제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하나의 단식계정<sup>2)</sup>에 통합되어 나타내야 한다.
3.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은 항상 중시되어야만 한다.<sup>3)</sup>
4. 예산은 연간이어야 하되, 예외적인 이월이 있을 수 있다.<sup>4)</sup>
5. 국제운영위원회의 공식승인을 받지 않는 한, 예산 지출의 라인 항목 간에 전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모든 수입금은 하나의 공동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sup>5)</sup>
7. 모든 지출은 합리적이며, 정당해야하고, 견실한 회계관리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8. 국제사무국은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여 회계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9. 지역분담금은 공정한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납부해야 한다(지연납부의 경우, 과태료(late fees) 부과할 수 있음). 지역분담금은 승인된 국제사무국 예산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각 참가국의 경제 규모 및 발달수준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2원화 방식으로 책정한다. 초기 참가국들은 아래와 같이 2원화하여 납부한다:

그룹 1 : 유럽연합&노르웨이, 일본, 미국

그룹 2 : 호주, 캐나다, 한국, 스위스

그룹 1의 최대연회비는 CDN\$200,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그룹 2의 경우는 CDN\$125,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은 국제사무국 운영가이드라인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하나의 단식(單式) 회계방식이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을 늘려서는 안된다.

4) 예를 들어, 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가 바뀔 때 마이너스 현금흐름에 대한 조치로서 “예외적인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

5) 모든 지역분담금은 하나의 공동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의 지역분담금/수입도 어떤 특정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없다. 동시에, 어떤 지출도 특정 contribution에 할당돼서는 안된다.

### 부록 3 : “IMS” 기술주제(技術主題)

일반적으로, 본 운영규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IMS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프로젝트들도 하나의 “IMS 프로젝트”를 위해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IMS 프로젝트”는 아래의 기술주제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다룰 수도 있다:

#### 1.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이슈들

- 제조시스템의 미래형 일반적 모델  
이 주제에 대한 예로는 "민첩제조", "프랙탈공장(fractal factory)", "생물학적 제조", "홀리스틱 기업통합" 등의 제안들이 있다.
- 제조업의 정보처리를 위한 지능형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글로벌 유통 및 글로벌 소싱의 생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네트워크 과 그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S/W)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 환경 보호, 에너지 및 재료의 최소 사용  
환경, 에너지 및 재료에 관한 논점들은 오로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서만 처리되어야 할 만큼 복잡하다. 이 분야의 조건들은 지역별로 매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 보호를 위한 제조기술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와 조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 전 지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IMS사업”의 우산 아래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조시스템에 대해 조화된 평가 및 경제적 정당화 모델 필요.

#### 2. 공정/프로세스 관련 이슈들

요구사항들의 변화, 인적·물적 자원의 절약, 그리고 근로자 작업환경의 개선에 따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주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정생산공정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정시스템. 폐기를 최소화하는 공정시스템.
- 공장(공정) 수명주기 사전평가 시스템  
에너지의 최소 소비 : 에너지 소비를 최소로 하면서 제조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 공정.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사이클 공정
- 에너지 보존방식의 모듈들. 에너지 보존방식의 생산관리기술.
- 제조공정 기술혁신 : "쾌속조형(RP)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근로조건의 변화, 제품 혹은 재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조공정.
- 제조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세스 모듈의 유연성 및 자율성 개선 : 무인형, 인간·기계 혼합형 및 노동집약형 시스템들을 아우를 수 있고, 제품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변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분산 시스템 및 그 모듈들.
- 제조업의 다양한 구성요소 및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화합 개선 : 제조용 개방형 인프라. 각각의 모듈 사이에서 "원격 ID"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과 같은 상호연결 정보시스템.

### 3. 전략/기획/설계 도구들

제조업은 글로벌 경제체제 안에서 존재한다. 원료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변형할 것인가는 하나의 전략적 결정사항이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경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고 구매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오늘날 제조업 관련 조직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계층적 구조의 경향은 조직, 시스템, 작업수행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적절한 제조전략을 정의하고 적합한 조직 및 비즈니스/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과 도구들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을 지원하는 방법과 도구들. 제조전략의 분석 및 개발을 지원하는 모델링 도구들.

확장기업 또는 가상기업 환경에서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설계지원 도구들.

### 4. 사람/조직/사회적 문제

- 제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진흥 및 개발 프로젝트 : 제조엔지니어는 다른 엔지니어들에 비하여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 그 자체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다. 그러한 연유로 국제기술위원회(ITC)는 제조분야를 하나의 사회로 보고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되는 프로젝트, 강력한 전문가집단 및 교육기관을 고려하고 있다. 제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직 창설이 이러한 제안에 포함된다.
- 제조 관련 인력/교육, 훈련 능력의 향상 : 공학교육은 공정(프로세스) 보다는 이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자주 있었다. 또한, 기초교육이 종종 부적절한 기술기능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면서, 산업계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혁신을 성공적인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고 산업계와 교육기관 사이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내교육(훈련)이 기술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종업원들 - 어떤 시스템에서도 핵심적 요소임 - 의 잠재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지속적 과정(프로세스)이라는 것을 뜻한다.
- 자율성을 갖는 해외 공장들 (자회사들의 보완적 비즈니스 기능 통합) : 해외 공장들은 본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것들이다: 현지노동력의 개발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었다. 그러나 해외공장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여건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분권화, 권리위임, 및 계층구조의 평탄화 같은 조직적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또한 공장들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기초적인 제조지식을 널리 확산하려는 "IMS"의 목표에도 공헌을 하는 것이다.
- 회사 보유기술 메모리 - 유지, 개발, 접근 : 지식 및 정보의 원천이 제조관련 기업들 안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조직적 학습"은 그런 지식들을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프레임워크 혹은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며, "IMS"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적절한 업무수행 측정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조업은 비용, 품질, 배달 및 유연성의 관점에서 업무 수행 시 우월성을 제공해

야 한다. 앞의 3가지 요소들은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되던 잘 알려진 수행 지표들이 반면에, 유연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조업을 위한 핵심적 속성이다. 새로운 패러다임들의 수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평가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 5. 가상/확장기업 관련 이슈들

확장기업은 기업에서 외부자원들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활용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요구에 대한 표현이다. 비즈니스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핵심적인 것은 탁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나, 제품/서비스 배달은 국제적 능력을 가진 복합적인 융합이 필요하다. 시장이 변화하므로 자원들의 배합을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주문에 맞출 수 있고 재구성이 가능한 제조자원에 연결될 수 있는 확장기업이 목표다. 확장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첨단의 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 보다는 조직적 측면이 주요 난제이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 확장기업의 가치사슬을 두루 아우르면서 정보 프로세스 및 유통방법을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
- 가치사슬을 두루 아우르면서 엔지니어링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 (비즈니스, 기능적, 기술적). 예를 들어, 확장기업에서의 동시공학
- 확장기업의 구성요소에 비용/책임/위험 및 보상을 지정하는 방법·접근법
- 확장기업 내에서의 개별 단위를 아우르는 팀 작업

## 부록 4 : 국제사무국(IRS)의 기능

국제사무국은 아래의 기능을 갖는다:

1. 국제회의 및 제안사항들에 대한 행사준비 제공
2. “IMS” 회의자료 및 기타 문서의 유지관리 및 배포
3. 국제운영위원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국제 홍보를 위한 행사준비 제공
4. 신규 혹은 입회가능성이 있는 참가국 교육
5. 프로젝트의 수행 중 및 종료 시, 정보의 보급·확산
6. 국제 프로젝트컨소시엄 구성 지원
7. 국제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연구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정리
8. 기타 국제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업무 수행

## 부록 5: 지역사무국(RSs)의 기능

“IMS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무국은 아래의 기능을 갖는다:

1. 국제회의 및 제안사항들을 위한 당해 지역의 행사준비 제공
2. 당해지역 내에서 “IMS” 회의자료 및 기타 문서의 유지관리 및 배포
3. 당해지역 내의 회의 및 진흥 행사준비 제공
4. 프로젝트의 수행 중 및 종료 시, 당해지역 정보의 보급·확산
5. 국제 프로젝트컨소시엄 구성 시, 당해지역 지원
6. 국제운영위원회 회의 등 참석 시, 당해지역 대표단 지원
7. 당해지역 내의 프로젝트 선정 및 리뷰 프로세스 수행
8. "IMS Scheme"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지역 내 주요그룹과 업무협조

## 부록 6 : 신규참가국의 승인

“IMS사업”의 신규참가국의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참여 희망국의 장관 혹은 정부/정부기관의 고위관료가 국제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참여의향서(參與意向書) 제출
2. 위 참여의향서의 접수사실을 기존 회원국의 수석대표들에게 통지하고, 각 회원국에서는 신청내용을 평가하고, 각 수석대표의 명의로 국제운영위원회 의장에게 대응방안을 보고
3. 기존 회원국 모두가 가입신청에 동의하면, 국제운영위원회 의장은 신청국이 본 운영규정을 비준할 경우, “IMS사업”은 신청국을 정회원국으로 승인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신청국에 발송

이 절차는 가능한 빨리 완료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참여의향서 접수 후 3개

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 부록 7 :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및 평가

지역사무국은 국제사무국과 함께 “IMS”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에 협조한다.

### A. 기본적 단계의 컨소시엄 구성 문서

각 컨소시엄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설명하는 기초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IMS 기술주제
2. 프로젝트의 산업계와의 연관성
3. 프로젝트 연구 계획, 조직 및 추진체계
4. 프로젝트 파트너들에 대한 기초 정보(연락처 포함)
5. 컨소시엄용 지적재산권 관련규정 및 기타의 법적사항을 설명하는 컨소시엄협정서(CCA)
6. 프로젝트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 관련정보

### B. 프로젝트 국제간사(ICP: International Coordinating Partner)

각 컨소시엄은 국제간사(ICP)를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국제간사는 프로젝트를 이끌어 완료시키는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실체(개인, 단체)이어야 한다. 국제간사의 역할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조정
2. 상세제안서(Full Proposal) 및 컨소시엄협정서 준비를 위한 조정
3. 컨소시엄, 국제운영위원회, 및 국제사무국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일의 접촉인물로 활동
4.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을 도모

### C. 잠재적 참여기관의 목록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사무국은 잠재적인 프로젝트 파트너로 예상되는 산업계, 대학, 및 정부 부문의 모든 조직에 “IMS” 관련 기초적인 문서, 국내 자금 지원 기회, “IMS사업”을 위한 국내적 이슈들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지역사무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참여기관의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동 목록에는 해당기관의 관심분야 및 능력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D. 프로젝트 제안서의 교환

어떤 기관이라도 예비제안서를 지역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동 제안서는 국제사무국에 전달되고 국제적으로 공지하게 된다.

지역사무국은 해당지역 내에서 예비제안서에 관심을 가질만한 기관에 동 제안서를 배포해야 한다. 동 제안서를 근거로,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파트너들은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E. 프로젝트의 평가, 선정, 및 검토

제안서 및 프로젝트들은 “IMS사업”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규정들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프로젝트 선정기준

- a. 산업계와의 연관성
- b. 부록 3에 명시된 기술주제들과의 적합성. 동 기술주제는 국제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 c. 기술적·과학적 장점
- d. 기술채택, 상업화 및 사용가능성
- e. 국제운영위원회는 부록 1의 지적재산권 관련규정과 부합성 평가
- f. 부가가치

### 2. 컨소시엄 선정기준

- a. 파트너들의 지역간 분포 : 컨소시엄 파트너는 적어도 3개 지역(참가국) 이어야 한다. 가입신청국의 파트너는 사례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 b. 균형을 이루는 공헌 및 이득 : 컨소시엄 파트너들은 프로젝트에의 공헌 및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얼마나 공평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지 제시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의 참여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 및 범주가 정해져야 한다.
- c. 지역간 리더십 : 국제컨소시엄은 상기 섹션 B에 명시된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국제간사를 지정해야 한다.
- d. 결과의 보급 :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결과(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리하면서 배운 경험 포함) 및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에서 용인된 비독점 기술 결과를 보급하는 계획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 3. 프로젝트 승인

프로젝트 승인 과정은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운영위원회와 국제사무국은 전체 승인과정을 민첩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a. 프로젝트 초록(Abstract)의 평가 : 컨소시엄은 계획된 연구의 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초록은 기본적인 지역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대표단은 국제운영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제안자들은 승인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다.
- b. 상세제안서 평가 : 컨소시엄은 모든 지역들이 상세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을 이용하여 최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안서에는 “IMS사업”의 원칙, 추진체계, 및 지적재산권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명기해야 하며, 서명된 컨소시엄협정서를 포함해야 한다.
- c. 최종승인 : 지역에서의 추천의견과 제출된 제안서에 근거하여 국제운영위원회가 최종승인을 하게 된다.

### F. 프로젝트 검토

국제운영위원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컨소시엄은 표준 형식에 맞추어 연간 요약보고서를 국제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역들은 언제라도 적당한 시점에 해당 지역 파트너들의 진행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부록 8 : 중소기업,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에 대한 “IMS”의 역할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하여 분명하고 잘 정리된 문서 준비 및 조언
- B. 참가국 영토 내에서의 법 혹은 관습, 및 그들의 실제적 의미에서 상존하는 제약사항들에 관한 "로드맵"
- C.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민원안내
- D. 특별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전자시스템
- E.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 집단에 참여할 기회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표명한 "관심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중소기업을 지향하는 전자검색시스템 시설)
- F. 프로젝트 수행팀들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한 IMS 사업의 "사례집"
- G. 다양한 중소기업부문을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한 보급·확산 행사

위 목록은 완벽하지는 않으며, 중소기업들의 참여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 요구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본 사업과 더불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항목들은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연구결과를 차세대 제조전문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